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9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소라, 강동길,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인제,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박강산, 박수빈,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송경택,
송재혁, 아이수루, 우형찬,
, 윤영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상욱,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황유정 의원(32
명)

1. 주문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증가와 예산 심사규모의 확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태임.
- 이에 정책지원관의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왔음.

- 작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임.
- 이에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작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 2.0시대를 가속화하게 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도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에도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현행법 상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이 가능해,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원 1명당 0.5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현재 지방의회들의 자치법규와 예산 심사규모의 증가 추세, 그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력으로 1명의 의원이 1명 정책전문인력의 온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 심의·확정 등의 입법 및 예산 과정을 내실화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기관을 온전히 견제·감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일동